

kiri Weekly

2013.5.20 제234호

이슈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포커스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발표와 영국 보험업계의 반응

금융보험 해설

퇴직연금의 이해 (8):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글로벌 이슈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와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절과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호주 감독당국은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외 재보험회사에 인가 취득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자국 소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 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재보험계약에 한해 해당 재보험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함.
 - 출재사의 요구자본(capital charge) 산출 시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차별적으로 대폭 상향조정함.
 -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재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재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해당 재보험금에 대해 100%의 위험계수를 적용함.
- 그러나 보험회사와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는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이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호주 재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 호주 재보험시장의 과점화, 출재집중도 증가, 재보험가용성 감소, 재보험요율 인상, 호주 금융시장의 위험 노출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우리나라의 경우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없으며 주요국에 비해 재보험자산 인정요건 등이 덜 엄격한 편인데,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의 배경, 내용,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주목해야 함.
 - 무엇보다도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의지와 시장효율성 저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 재보험거래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합리화 또는 강화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건전성규제가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방법 및 방식 선택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1. 검토배경



-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재보험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절과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재보험금 미회수의 원인은 크게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unwillingness to pay)과 지급불능(inability to pay)으로 구분됨.
-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이하 'IAIS'라 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지급불능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 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다양한 재보험자산인정요건을 두고 있음.
 - IAIS는 재보험감독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각국이 타 감독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감독의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재보험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¹⁾
 -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의 담보설정을 출재사의 재보험자산인정요건(즉,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요건)으로 함.²⁾
- 특히, 호주에서는 2008년부터 호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 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해당 재보험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분쟁 및 지급거절에 대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
 - 이외에도 재보험자산인정요건을 강화하고 요구자본(capital charge) 산출 시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계수(capital factor)를 차별적으로 상향조정함.³⁾
- 이에 본고에서는 재보험금 회수를 위협하는 환경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호주의 건전성규제 강화의 배경, 내용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함.

1)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타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해외수재사의 지급불능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국가가 해외출재한도 또는 담보설정과 같은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보험회사의 효율적 위험전가를 저해한다고 주장함.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송윤아 (2010),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2) 통상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재보험자산)으로 표기함.

3) 상세한 내용은 3장에서 논의함.

2.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을 둘러싼 환경변화



- 재보험금 미회수의 원인은 크게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과 지급불능으로 구분되며, 이 장에서는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각 원인별로 살펴보도록 함.

가.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

- 지급능력과 상관없이 계약조건 및 손해사정에 대한 분쟁, 그 외 절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음.
 - Brown and Julga(2005)에 따르면 분쟁 중인 대부분의 재보험계약은 리스크에 대한 미고지 또는 부실고지, 계약조건의 부실고지, 부적절한 출재보험료 및 손해액, 부적절한 통보 등에 기인함.⁴⁾
 - 2009년 미국 소재 출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는 서류미비(46%), 담보분쟁(28%), 접수지연(3%), 통보부적절(1%)순으로 높음(〈표 1〉 참조).
 - 동 설문조사는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버뮤다 등에 소재한 138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09년에 실시됨.
 - 또한 상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재보험료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재보험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임(〈표 2〉 참조).
 - 설문대상 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분쟁 및 소송 중)없이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 지급을 9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출재사는 해당 출재분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표 1〉 재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사유

구분	서류미비	담보분쟁	접수지연	통보부적절	기타
2005년	41%	34%	7%	7%	11%
2009년	46%	28%	3%	1%	9%

자료: An Aon Company(2010.) "Ceded Reinsurance Operations Survey".

4) Brown and Julga(2005), "Property & Casualty-Risk & Benefits Management", National Underwriter.

〈표 2〉 재보험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출재보험료	재보험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		
	1~30일	30~60일	60일 이상
100만 달러 미만인 회사	62%	29%	0%
100만 달러 ~ 500만 달러인 회사	65%	27%	8%
500만 달러 초과인 회사	27%	46%	14%

주: 무응답 또는 응답거절 회사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자료: An Aon Company(2010), "Ceded Reinsurance Operations Survey".

■ 최근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재보험계약 쌍방 간 최대신의성실의무 준수 유인이 감소하고 재보험분쟁이 잦아짐.⁵⁾

- 과거 재보험계약 쌍방이 최대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할 유인이 컸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재보험회사는 출재사의 선의를 신뢰함으로써 리스크 또는 클레임 조사·처리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즉, 모니터링 비용과 사전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통상 출재사는 리스크 또는 클레임을 조사하고 수재사는 수재여부, 재보험료 등을 결정할 때 출재사의 조사정보를 참고함.
- 둘째, 재보험시장에서 재보험회사가 많지 않고 널리 알려져 있어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관행이었으므로, 거래쌍방의 평판은 미래 소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셋째,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거래일방의 최대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은 단기이익을 초과함.
- 따라서, 과거 재보험시장에서는 거래당사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법적 기준보다는 자기유인(self-interest)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

■ 잦은 분쟁을 야기한 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재보험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보험계약 당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평판에 덜 구애받는 경향이 있음.

- 재보험시장 내 기업 수가 증가하거나 진입·퇴출이 잦아질수록, 신뢰할만한 평판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호 평판에 대해 알기 어려움.
- 또한 재보험회사의 진입·퇴출이 잦은 상황에서 재보험거래 정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출재사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5) Thomas, Steven W.(1992), "Utmost Good Faith in Reinsurance: A Traditional in Need of Adjustment," Duke Law Journal (41).

- 대개 재해보험은 사고발생 후 청구에서 지급 및 정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민감한 반면, 재물보험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신용리스크에 덜 민감함.⁶⁾

■ 둘째, 보험영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재보험계약 당사자 간 반복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이 낮아짐.

- 언더라이팅 손실(즉, 보험영업 적자) 및 이윤폭 감소로 인해 출재사는 장기거래관계보다는 보다 낮은 요율을 제시하는 재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보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려고 함.
- 재보험회사도 투자소득으로 언더라이팅 손실을 보전하고자 인수여력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보험료 수입을 통해 현금흐름을 높이려고 함.

■ 셋째,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손실의 발생이 보다 빈번해짐에 따라 최대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장기적인 거래관계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보다 커짐.

나.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⁷⁾

■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에 적시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IAIS에 따르면 1980~2011년 간 29개 재보험회사가 파산하였고 이로 인한 누적손실은 동기간 출재보험료의 0.43%인 18억 달러임.⁸⁾
- 또한 A. M. Best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1969~2010년)의 3.7%⁹⁾ 그리고 생명·건강 보험회사 파산(1976~2008)의 2.0%¹⁰⁾가 재보험회사의 파산에 기인함.

6) 사고발생 후 청구에서 지급 및 정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긴 꼬리 보상(long tail liability)과 짧은 꼬리 보상(short tail liability)으로 구분됨. 산재보험, 의료사고보험 등 재해보험은 대표적인 긴 꼬리 보상보험임(<http://www.irmi.com/online/insurance-glossary/terms/l/long-tail-liability.aspx>).

7) 다음 자료의 일부를 인용함. : 송윤아(2012),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8) IAIS(2012), "Re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9) A. M. Best(2011), "1969~2010 Impairment Review," A. M. Best Special Report, 2011(Weiss, M. A.,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Laval University, 2011 재인용)

10) A. M. Best(2009), "1976~2008 Impairment Review," A. M. Best Special Report, 2009(Weiss, M. A.,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Laval University, 2011 재인용)

-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 발생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기함.
-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재보험 활용도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소수 재보험회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대형 인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세를 보임.

3. 호주의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가. 해외 재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배경

- 2007년 호주 정부는 호주에 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은 채 중개사 또는 브로커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해외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
- 보험법(Insurance Act 1973)에 의거 호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하고 호주 건전성감독규제기관인 APRA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함.¹¹⁾
- 그러나 해외 보험회사(Direct Offshore Foreign Insurers, DOFIs)가 호주 내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영업(marketing insurance)을 하는 것은 당시 보험법에 명시된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해외 보험회사는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호주 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았음.

11)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호주 건전성기관법(Australian Prudential Authority Act 1998)과 1987년 회사법(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87)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연방규제기관으로서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규제기관임. 보험영업의 인가를 받기 원하는 자는 APRA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APRA의 건전성 기준을 따라야 함.

- 이에 호주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업을 확대 정의함으로써,¹²⁾ 2008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법에 의거 인가를 받고 APRA의 건전성규제를 받도록 함.
 - 즉, 호주에서 보험영업을 하고자 하는 해외 보험회사는 호주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부는 이러한 해외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가 시장 담보력을 축소시키고 자본 및 관리 측면에서 건실한 해외 보험회사 간 경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출재사를 통한 간접규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가 취득을 강제하지 않음.
 - 호주 정부는 자국 내 재보험담보력이 충분치 않고 접근에 제약을 가할 경우 보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와 거래하는 인가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통해 해외 재보험회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 2007년 APRA는 해외 재보험회사에 인가 취득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이와 거래하는 자국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요구자본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등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함.

나. 2008년 제도개선

- 2008년 건전성규제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 시 호주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해당 재보험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함.¹³⁾

12) Insurance Act 1973 제3조에서는 보험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undertaking liability, by way of insurance (including reinsurance), in respect of any loss or damage, including liability to pay damages or compensation, contingent upon the happening of a specified event, and includes any business incidental to insurance business as so defined.

13) GPS 230 paragraph 33: For any reinsurance contract entered into by a regulated institution incepting on or after 31 December 2008, the regulated institution must ensure that the reinsurance contract provides that: (a) the governing law of the reinsurance contract is Australian law; and (b) any disputes that fall to be determined by a court are to be heard in an Australian court.

- 이는 분쟁 및 지급거절 위험에 대비한 조치로서 2008년 12월 31일 이후 체결된 재보험계약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재보험자산을 공제함.¹⁴⁾

■ 둘째, 출재사의 요구자본(capital charge) 산출 시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차별적으로 대폭 상향조정함.

- 요구자본 산출 시 적용되는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는 거래상대방의 인가여부, 담보설정여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됨.¹⁵⁾
 - 거래상대방이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인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는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 20%, 2등급인 경우 40%, 3등급인 경우 60%, 4등급 이상인 경우 100%임.
 - 반면, 거래상대방이 인가 재보험회사인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는 신용등급이 2등급인 경우 2%, 3등급인 경우 4%, 4등급인 경우 6%, 5등급 이상인 경우 8%임.
 - 7등급의 인가 재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20%로 이는 1등급이면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계수와 동일함.

〈표 3〉 거래상대방 신용등급별 위험계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인가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할 재보험금을 포함한 일반 자산에 대한 위험계수	비인가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할 재보험금에 대한 위험계수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
1(정부)	0%	2%	20%
1(기타)	2%	2%	20%
2	2%	4%	40%
3	4%	6%	60%
4	6%	8%	100%
5	8%	12%	100%
6	12%	20%	100%
7	20%	20%	100%

자료: GPS 114 Table 2, Table 3, Table 4.

■ 셋째,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재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재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해당 재보험금에 대해 100%의 위험계수를 적용함.¹⁶⁾

14) GPS 230 paragraph 34: Failure to comply with paragraph 32 or 33 results in a deduction of relevant reinsurance assets from Common Equity Tier 1 Capital in accordance with Prudential Standard GPS 112(Capital Adequacy: Measurement of Capital).

15) GPS 114 paragraph 73: Reinsurance recoverables from non-APRA-authorized reinsurers are subject to the default stress factors that are higher than would otherwise apply under paragraph 67.

- 넷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에게 비인가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가능한 재보험금을 상세히 평가하고 자문할 의무를 부여함.¹⁷⁾
 - 선임계리사는 재보험금 회수가능성 평가 시 신용리스크, 재보험회사의 지급의도, 서류구비상태, 계약내용, 재보험자산 실현을 저해하는 기타 법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다섯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1사당 출재 한도를 규정함.¹⁸⁾
 - 캡티브사의 경우 출재보험료가 총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다. 분쟁 및 지급거절 대비 문서화 규제

- 호주는 분쟁 및 지급거절위험에 대비하여 2개월 원칙과 6개월 원칙을 통해 출재사에 재보험계약의 신속·정확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보험자산을 감액함.¹⁹⁾
- 구체적으로, 출재사는 재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placing slip(재보험처리서류)을 확보하고 재보험계약보고서를 APRA에 제출해야 함.
 - 출재사는 모든 참여 재보험회사가 서명하여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 즉 placing slip을 2개월 이내에 확보해야 함.²⁰⁾
 - placing slip은 완벽한 재보험 계약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위험을 재보험회사에 전가한 경우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중개사가 작성한 재보험계약조건 요약서임.²¹⁾
 - 보험회사는 매년 재보험특약을 맺은 이후 2개월 내 재보험특약보고서(REAS)를 APRA에 제출해야 함.

16) GPS 114 paragraph 75.

17) GPS 320 paragraph 44.

18) GPG 245 paragraph 5.

19) GPS 230 paragraph 34.

20) 우리나라 재보험관리모범규준도 '2개월 원칙'을 권고하고 있지만, '2개월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재보험준비금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 “재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재보험자가 서명하여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재보험자가 참여하거나 재보험 계약 확정 지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보험 계약 체결 후, 최대 2개월 내에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21) GPS 230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cover note(재보험인수증)는 재보험회사 또는 중개사가 출재사에 발행하는 약속서이며, 여기에 상세계약조건과 각 재보험회사에 출재된 위험의 비중에 대한 내용이 있음. slip wording은 계약당사자들 간 미리 합의된 표준계약내용을 의미하며, 이는 재보험중개사 또는 재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됨.

- 출재사는 6개월 이내에 출재사와 모든 참여 재보험회사의 서명과 날인이 기입된 특약서 내용(full treaty contracting wording)을 확보해야 함.
- 상기 특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재보험거래조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짐.

4. 결론 및 시사점



- 호주는 재보험 관리에 대한 지침의 구체화 및 명문화와 재보험자산인정요건 강화를 통해 재보험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절위험과 지급불능위험에 대비하고 재보험금 회수가능성을 제고함.
- 보험회사와 비인가 재보험회사는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에 대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함.
 - 첫째, 비인가 재보험거래에 대한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은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위한 IAIS의 움직임에 역행함.
 - 둘째, 규제 강화로 인해 호주 재보험시장이 과점화되고 출재집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 가용성이 줄어들고 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임.
 - 해외 재보험회사는 호주 재보험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 반면 호주 보험회사는 소수의 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이 증가함.
 - 셋째,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으로 인해 호주 금융시장에 위험이 집중되고 해외 재보험회사에서 호주 은행산업으로 위험전가가 이뤄질 것임.
 -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으로 인해 해외 재보험회사 이용이 줄어들거나 해외 재보험회사가 호주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 취득 및 신용장 개설을 할 것임.
 - 넷째, 해외 재보험회사에 간접적으로 담보설정 또는 자회사·지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재보험회사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호주 소재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이에 대해 APRA는 다음과 같이 대응함.²²⁾

-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선결과제가 많기 때문에 호주의 규제 방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의 경우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건전성 기준에 의거한 시장제한적 조치를 인정한다고 언급함.
- 그 외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세계 재보험시장이 호주의 건전성규제에 신속히 적응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 특히, APRA는 미담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자국 소재 보험회사에 보다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²³⁾

- 첫째, APRA는 계약자나 수익자를 대신해 비인가 재보험회사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없으며 국내 재보험회사에 비해 비인가 재보험회사를 감독하기 어려움.
- 둘째, 재보험회사의 파산 및 지급불능 시 호주 소재 이해관계자가 청산과정에서 더 불리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셋째, 호주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청산인이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데 법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비인가 해외 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없으며 주요국에 비해 재보험자산인정요건 등이 덜 엄격함.

-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요건, 요구자본, 재보험관리모범규준 등을 통해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고 있음.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는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을 면제함으로써 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도록 유도함.
 - 또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산출 시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음.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재보험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함.
- 특히, 요구자본 위험계수와 재보험자산인정요건 등을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인가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22) APRA(2008), "Refinements to the General Insurance Prudential Framework-Final Response to Industry".

23) Ibid.

- 호주의 건전성규제 개혁의 배경, 내용,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무엇보다도 국가 간 재보험감독 상호인정을 위한 IAIS의 의지와 시장효율성 저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이 재보험거래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합리화 또는 강화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건전성규제가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 방법 및 방식 선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오랫동안 출재한도, 요구자본, 담보설정 및 재보험자산인정 요건 등을 통해 재보험거래를 감독해온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규제효과를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